

【 기술 기획 】

나. 지역특화작목육성추진시범사업(인센티브사업비) 지원

(1) 목 적

- 지방화 이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중 유형별로 우수센터를 선정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

(2) 추진방향

-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여
-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여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의 추진 효과 극대화

(3) 2007 추진계획

(가)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 지원계획

- 유형별 우수기관 : 6개분야 31개소
 - 최우수 : 고품질 쌀 생산 분야 여주군
 - 장 려 : 농촌생활자원활용 분야 화성, 농촌지도역량강화 분야 용인
- 사업비 : 최우수 500백만원, 장려 220백만원/개소
 - ※ 재원분담 : 국비 70%, 도비 30%

(나) 사업내용

-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센터시설 설치, 장비 구입비 등
-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
- 기타 실증시범사업비 등

(다) 사업대상 : 센터, 농가·단지

(라) 기대효과

- 지방화 이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중 유형별로 우수센터를 선정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

(마) 사업추진요령

- 사업 수행주체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이며 업무내용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자치단체를 통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추진
 - 농업인 등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자에게 자부담을 부과할 수 있음
-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책임 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 등의 수요가 많으며 시범효과가 높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
-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(412-01)사업비로 지원되므로 성격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되 경상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
 - 자본보조사업비라도 사업목적인 지역특화작목육성에 직접적 관련이 적은 센터 사무실 환경개선(개·보수, OA사무실 설치, PC구입 등)과 차량구입 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.

(바) 행정사항

-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를 중앙에 보고(보고양식 추후 별도제시)
 - 사업계획 보고 : '07. 1. 25일한
 - 추진결과 보고 : '07. 12. 10일한